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기업합병의 회계처리 방법 선택에
관한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경 영 관 리 전 공

양 문 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홍용식

기업합병의 회계처리 방법 선택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Accounting Methods for M&A on
The Accounting in China

2013년 12월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

양문몽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홍용식

기업합병의 회계처리 방법 선택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Accounting Methods for M&A on
The Accounting in China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

양문몽

양문몽의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기업합병의 회계처리 방법 선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관리전공
양 문 몽

경제발전과 함께 시장의 국제화와 기업의 형성과 확장은 자체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합병과 공동경영 방식으로 발전하여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기업합병에 더 편리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기업합병의 회계문제는 줄곧 회계이론과 실무 분야에서 동일하게 관심가져왔던 문제들이며 분쟁이 많았던 문제 중 하나였다. 다양한 합병회계 처리방법은 회계결과의 다양함을 가져다주었다.

기업합병 본질과 다양한 이해를 기반으로 중국 회계 실무분야에서 기업합병을 기록하는 회계방법으로는 주로 매수법, 지분통합법과 신실채법이 있다. 2001년 6월 미국 재무회계준칙위원회에서는 FAS141 『기업합병』 및 FAS142 『영업권과 무형자산』 두 재무회계준칙을 시행하였고, 모든 기업합병 회계처리에서 매수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정식으로 지분통합법을 폐지하였다. 이와 동시 분기상각영업권을 취소하고 해마다 테스트 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국제준칙은 매수법만을 규정하고 비동일한 지배 기업합병의 회계규범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일한 지배하의 기업합병 회계처리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기업합병준칙은 위 두 가지 기업합병의 회계처리를 규정하였다.

국제 추세로 지분통합법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중국에서는 지분통합법과 매수법 공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2장에서는 기업합병과 합병회계 방법에 관해 소개를 하였고, 기업합병의 동기를 분석하였다. 말미에는 중국 회계준칙에 대한 기업합병 회계를 소개하였다.

본문의 핵심 부분은 제3장이다. 주로 화태(华泰)주식이 Norskeskog를 인수한 사례 분석하여 다양한 회계방법으로 회사 주요 재무지표로 얻게 되는 다양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매수법도 회사 당기 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은 내리게 되었다.

중국은 지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하는 단계에 있다. 한 편 개혁개방이 계속 심화되면서 시장경제도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있고 회계와 관련된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 회계업무처리도 날마다 복잡해지고 있다. 투자자, 채권자와 사회대중 등이 회계정보 노출의 시효, 범위, 품질에 점점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 편 법의 의식이 약하고 감독관리체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조직과 개인은 이익의 유혹으로 법률, 법규, 준칙의 빈틈으로 장부와 재무제표를 위조하여 나라와 투자자들을 손실이 되었다. 회계정보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감독관리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때문에 증권관리부문, 재산권거래시장, 회계 및 자산평가 사무소, 투자은행 등 관련 부문들의 상호 협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된 법률제도를 완벽히 하고 각 부문의 감독관리 역도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로써 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의 남용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매수법을 위주로 하고 현재는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합병에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합병 회계방법 규범의 전략이다.

【주요어】 기업합병, 매수법, 지분통합법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배경과 의미	1
1.2 연구방향과 연구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2.1 기업합병 유형 및 의의	4
2.1.1 기업합병 유형 및 의미	4
2.1.2 기업합병 세 가지 기본방식 및 의의.....	4
2.1.3 신 기업 회계준칙에서의 합병 유형.....	6
2.2 기업합병의 두 가지 동기	8
2.2.1 기업합병의 전략동기.....	8
2.2.2 기업합병의 재무동기.....	10
2.3 기업합병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	11
2.3.1 합병방법의 발전.....	11
2.3.2 매수법.....	12
2.3.3 지분통합법.....	14
2.3.4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차이.....	17
2.3.5 두 가지 방법이 회계제표 및 관련 재무지표에 주는 영향.....	18
2.3.6 국제회계에서 매수법을 사용하는 이유.....	20
2.4 중국의 새로운 회계준칙이 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21
2.4.1 동일지배 하에 기업합병 회계처리 방법의 규정.....	21
2.4.2 비동일 지배하에 기업합병 회계처리 방법의 규정.....	22

III. 화태주식회사와 Norskeskog회사 합병 사례분석.....	25
3.1 합병기업의 기본상황	25
3.1.1 합병기업의 기본상황.....	25
3.1.2 피 합병기업의 기본상황.....	27
3.1.3 합병방안의 관련 내용.....	28
3.2 합병 방안의 다양한 선택분석	32
3.2.1 인민폐 1위안 합병방안.....	32
3.2.2 인민폐 6.77억 주식구매 방안.....	33
3.2.3 인민폐 6.77억 기부방안.....	34
3.3 합병방안 회계방법의 다양한 선택에 비교분석.....	35
3.3.1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관련 회계처리.....	35
3.3.2 각 방면 이익에 대한 생각.....	39
3.3.3 회계처리방법 선택에 대한 생각.....	43
IV. 중국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의 현실적 선택	45
4.1 두 가지 회계 처리방법의 발전추세.....	45
4.2 중국 기업 합병 회계처리방법의 현실적 선택	47
4.2.1 중국 기업 합병이 회계처리상 문제.....	47
4.2.2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사용비교.....	50
4.2.3 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의 현실적 선택.....	52
4.2.4 지분통합법 중국에서의 응용조건.....	52
V. 결 론	54

참고문헌	55
국내문헌.....	55
국외문헌.....	56
ABSTRACT.....	57

표 목 차

<표 1> 화태주식회사2009-2012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6
<표 2> 화태주식회사2009-2012년 주요 재무상황	27
<표 3> Norskeskog 2012년6월30일 재무상태표	28
<표 4> Norskeskog 2012년 1-6월 손익계산서	28
<표 5> 화태주식회사 2012년 1-6월 손익계산서	30
<표 6> 화태주식회사 2012년 1-6월 주요 재무상황.....	31
<표 7> 세 가지 방법 화태주식회사에 대한 영향 비교.....	35
<표 8> 화태주식회사와 Norskeskog 2012년6월30일 재무상태표.....	36
<표 9> 화태주식회사와 Norskeskog 2012년1-6월 손익계산.....	37
<표 10>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합병후 화태주식회사 재무제표의 차이.....	38

I. 서 론

1.1 연구배경과 의미

기업은 현대사회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조직이며, 기업경영은 현대사회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라 말할 수 있다. 기업 생산경영은 날마다 다원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원재료 투입, 가공, 판매방식으로 이윤을 이루는 것 외에 투자, 인수, 합병, 재구성 등 방식으로 다양하게 생산경영 경로를 확장 하여 기업의 수익능력을 높인다.

경제발전과 함께 시장의 국제화와 기업의 형성과 확장은 자체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합병과 공동경영 방식으로 발전하여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기업합병에 더 편리한 조건을 창조하였다. 10여 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에 총 300여 개 상장회사들이 인수 합병을 통해 기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고, 수익능력도 높여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는 회계운용의 중요성을 한층 더 깨닫게 하였다. 기업 합병 회계처리 규범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 재무부는 2006년 2월 15일 기본준칙과 38개 구체적인 준칙으로 구성된 『기업회계준칙2006』을 시행하였다. 기업 합병과 관련된 거래 사항의 확인, 측정 및 관련 정보 노출에 대해 처음으로 전면적인 규범화를 시행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 상장회사 단위에서 시행하였고, 기타 기업들이 집행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기업합병의 회계문제는 줄곧 회계이론과 실무 분야에서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들이며 분쟁이 많았던 문제 중 하나였다. 다양한 합병회계 처리방법은 회계결과의 다양함을 가져다주었다.

기업합병 본질과 다양한 이해를 기반으로 중국 회계 실무분야에서 기업합병을 기록하는 회계방법으로는 주로 매수법, 지분통합법과 신실체법이 있다. 2001년 6월 미국재무회계준칙위원회에서는 FAS141 『기업합병』 및 FAS142

『영업권과 무형자산』 두 재무회계준칙을 시행하였고, 모든 기업합병 회계처리에서 매수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정식으로 지분통합법을 폐지하였다. 이와 동시 분기상각영업권을 취소하고 해마다 테스트 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국제준칙은 매수법만을 규정하고 비동일한 지배 기업합병의 회계규범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일한 지배하의 기업합병 회계처리를 규정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기업합병준칙은 위 두 가지 기업합병의 회계처리를 규정하였다.

국제 추세로 지분통합법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중국에서는 지분통합법과 매수법 공존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의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자 경제실체는 무엇인가? 중국의 새로운 회계준칙규정에 의한, 비동일한 지배에서 기업합병에 매수법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지배 하에서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발전 추세는 어떤지? 이런 질문들로 필자는 합병 회계방법 선택에 대해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방향 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논문의 연구배경, 의미 및 관련 연구성과들을 소개하였고 기업 합병회계의 선택에 따른 인한 문제들을 총론하였다.

제2장: 이론 연구부분으로써 기업합병과 합병회계 방법에 관해 소개를 하였고 기업합병의 동기를 분석하였다. 말미에는 중국 회계준칙에 대한 기업합병 회계를 소개하였다.

제3장: 본문의 핵심 부분으로써 중국의 합병회계방법 선택을 연구하였다. 주로 화태(华泰)주식이 Norskeskog를 인수한 사례 분석하여 다양한 회계방법으로 회사 주요 재무지표로 얻게 되는 다양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매수법도 회사 당기 수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은 내리게 되었다.

제4장: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 공존하는 이원형제는 중국의 정세에 어울리는 현실적 선택이라는 것을 연구하였다. 중국 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의 현실적

선택을 분석하였고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의 사용은 반드시 중국 실제정세와 합병되어야 한다는 제시를 하였고 반드시 기업의 관련 정보들을 진실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관련 건의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규범 연구를 위주로 사례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귀납법, 연역법, 비교법 등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기업합병 유형 및 의의

2.1.1 기업합병 유형 및 의의

기업합병을 기업인수라고도 하며 광의와 협의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광의의 기업합병은 두개나 두개 이상 기업들이 재산권 거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그룹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경제적 그룹의 법적 형식과 무관하고 단일적인 경제주체와 법적주체만의 존재여부와 무관하다. 기업자원의 재구성 혹은 통합을 통해 일종 경영이나 재무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효율을 개선시키거나 확인자산의 최적화 배치, 증량자산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광의의 기업합병은 세 가지 형식: 흡수합병, 신개발합병과 지주합병을 포함한다. 협의의 기업합병은 기업 재산권 거래 후 단일적인 경제주체와 법적주체만 존재하는 것이며,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 형식만 포함한다.

『기업회계준칙 제20번-기업합병』의 제1장 총칙 제2조 기업합병은 두개 이상 단독적인 기업을 합병하여 하나의 보고주체를 이루는 거래 혹은 사항을 말한다. 기업합병은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병과 비동일 지배 하의 기업합병으로 나누어진다. 정의로 보면 중국 회계준칙에서 말하는 기업합병은 광의의 기업합병이다.

2.1.2 기업합병 세 가지 기본방식 및 의의

법률형식과 운영절차에 따르면 기업합병을 지주합병,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1) 흡수합병, 한 기업이 다른 한 기업 혹은 여러 기업의 순자산을 얻는 것이

며 합병 후 전자는 법인지위를 보유하고 후자는 흡수합병 후 법인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 "갑"이 기업 "을"에 대해 흡수합병을 한다면, 기업 "을"의 순자산 및 채무는 전부 기업 "갑"이 인수 관리하게 되며, 해당으로 기업 "을"은 기업 "갑"의 공장이나 지사로 된다. 흡수합병의 구체적 방식은 기업 "갑"이 현금 혹은 기타 자산으로 기업 "을"의 주주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고, 기업 "갑"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출자증명서에 사인하여 증명서로 기업 "을"의 주주들과 기업 "을"의 소유권을 교환할 수 있다. 합병기업은 합병을 통해 피인수기업의 전체 순자산을 받게 되며 관련 자산, 부채를 자체 장부와 제표에 귀납하여 정산한다. 흡수합병의 특징은 피인수기업은 피인수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단일적인 경제주체와 법적 주체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2) 신설합병, 또 신개발합병이라고도 한다. 몇 기업이 순자산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받은 후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 설립한 회사는 이미 해체된 각 기업자산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각 기업의 채무를 부담한다. 신설합병 특징은 기업이 합병을 한 후 완전 새로운 기업 하나를 세웠다는 것이다. 신설합병의 결과는 새로 설립된 회사 하나의 단일적인 경제주체와 법적주체만 남게 된다.

(3) 지주합병, 한 기업이 장기적인 주주권투자로 다른 한 기업 혹은 여러 기업들의 지분을 얻어 피투자회사가 투자를 한 기업의 소속기업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지분을 얻는다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다수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결정과 경영결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주합병은 기업합병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방식이다. 지주합병에서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은 합병 전후 모두 독립적인 법적주체와 경제주체이며 합병은 기업의 법적 주체지위를 개변하지 않는다. 지주합병에서 흔히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 하고 지주주권을 얻은 회사를 모회사라고 한다. 합병기업은 합병 거래 혹은 사항을 통하여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며 피인수기업의 생산경영결정을 주도할 수 있으므로 피인수기업을 합병 재무제표 범위에 포함시켜 보고주체를

이론다. 지주합병의 결과는 각 회사가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합병 후 단일적인 법적주체와 경제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합병의 목적은 한 기업 혹은 여러 기업들의 자산을 지배하기 위해서이며, 본질적으로는 기업체 움직임에서 각 권리주체가 기업재산권 규정의 제도에 따라 진행하는 일종 권리양도행위다. 기업인수 과정에서 어느 한쪽 혹은 일부 권리주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양도하여 해당 수익을 얻게 되며 다른 한쪽 혹은 다른 부분의 권리주체들은 일정한 대가를 치러 이 부분의 지배권을 얻는다. 때문에 기업합병 과정은 본질적으로 기업권리주체가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다.

한 기업 혹은 여러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직접 자산이나 주주주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직접 자산을 구매하여 지배하면 바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며, 주주의 주권을 구매하여 지배하면 바로 이것이 지주합병이다. 직접 자산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주합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지주합병은 지배가 가능한 한도의 지분만 구매할 필요가 있고 지분전부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지주합병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지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지주합병에서 각 합병기업들은 여전히 각자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기업에서는 제한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합병기업이 부도나거나 재무 위기가 일어날 경우, 기타 기업은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때문에 지주합병의 위험이 적다.

지주합병의 본질은 지배고 법적 주체의 해체가 아니다. 기존의 각자 독립적인 기업들이 합병하여 하나로 되고 경제자원과 경영활동이 단일적인 관리기구 지배하에 있으면 기업합병을 완성한 것이다.

2.1.3 신 기업 회계준칙에서의 합병 유형

중국 회계실무 조작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의 합병 특징을 감안하여 기업회계준칙에서는 합병을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눈다. 즉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

병과 비동일 지배 하의 기업합병이다.

(1) 동일지배하의 기업합병

동일지배하의 기업합병은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이 합병 전후 동일한 한 기업 혹은 여러 기업들의 최종지배를 받는 것이며 이런 지배는 임시적인 기업 합병이 아니다. 최종 지배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지배할 수 있는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런 합병은 관련된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거래 가격은 흔히 불공평하거나 가격의 공평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며 이윤이 조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 기업 합병이 동일지배 하의 합병인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①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에 대해 합병 전후에 지배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을 흔히 기업그룹의 모회사라고 한다.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병은 일반적으로 기업그룹 내부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룹 내부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자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은 본질적으로 그룹 내부 기업들 사이의 자산 혹은 권익의 전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룹 외부에서 자회사를 인수하거나 그룹 외 기타 기업들에게 자회사를 파는 상황은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에 참여한 합병기업들에 대해 합병 전후 항상 지배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이 그룹의 모회사다.

② 지배실시의 시간적 요구는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이 합병 전후 긴 시간 동안 최종지배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합병 기업들 사이,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이 최종지배기업의 지배시간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1년 포함)이며, 기업합병 후 이루어진 보고주체가 최종지배기업의 지배시간에 있는 것도 반드시 1년 이상(1년 포함)이어야 한다.

이런 시간적 요구에 의하면, 합병일에 이미 동일지배 하 기업합병에 따라 처리된 것은 합병일 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1년 이내)에 합병기업이 기업 합병에서 얻은 중요한 자산, 부채 등을 판매하여 바로 이익손해를 보게 된 경우 상기 시간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합병기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업 합병 처리에 대해 반드시 비동일 지배 하의 기업합병 원칙에 따라 처리

하고 조정해야 한다.

③ 동일하게 국가의 지배를 받는 기업들 사이의 합병이 무조건 동일 지배 기업합병이 아니다. 동일 지배 기업합병은 같은 그룹 내부 기업들 사이의 합병이며 국가소유권기업이 동일하게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양자 사이의 합병을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병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2) 비동일 지배의 기업합병

비동일 지배 하의 기업합병은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이 합병 전후 같은 한 기업이나 여러 기업의 최종지배를 받지 않는 합병거래를 말한다. 즉 동일 지배 하 기업합병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의 기타 기업합병이다.

동일지배 하 기업합병과 비동일 지배 기업합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동일지배 하 기업합병에서 합병 각 기업은 합병 후 지배권의 본질적인 전이를 하지 않으며 여전히 최종으로 모회사에서 지배를 한다. 모회사의 지배 하에서 자회사 혹은 손회사 등 사이의 합병은 자원의 재구성에 속하며 모회사가 지배하는 자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모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주권으로 다른 자회사가 추가발행 하는 주식을 교환하거나, 그룹 내부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로부터 어느 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병으로 볼 수 있다.

2.2 기업 합병의 두 가지 동기

2.2.1 기업 합병의 전략동기

기업합병의 가장 주요 목표는 자원을 재통합시켜 기업이 전략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업합병을 통해 기업규모를 확장하며 경제규모를 실현한다.

기업은 합병행위를 통해 기업자산에 대한 보충과 조정을 할 수 있다. 한 편 최적경제규모 요구에 도달할 수 있고 경영비용을 최소화로 줄이고 다른 한 편

으로는, 기업이 전체적인 상품구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품의 다양한 생산을 실현할 수 있고, 일관적인 생산절차를 이용해 생산과정에서의 절차를 줄여 생산능력을 충분히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규모는 두 방면에서 드러난다: ① 생산경제규모. 기업에서 합병을 통해 자원배치를 하여 최적경제규모의 요구에 도달한다. 최저 단위 상품 원가를 실현하여 경제수익을 높인다. ② 기업경제규모. 기업이 관리, 생산과 분배에서 일종 최적의 패턴을 이룰 수 있으면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 합병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판매비용을 절감하며, 연구비용을 집중시켜 기업의 위험저항 능력을 강화시킨다.

(2) 자원의 공유와 서로 보충하고 보완한다.

기업은 각종 합병행위를 통해 자금, 기술, 판매, 브랜드와 토지 등 자원을 통합시킬 수 있으며 자원의 공유 혹은 보충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일종 선진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여 자체 기술자원을 보충하며 업종에서의 기술의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한다. 피인수기업은 흔히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위험을 줄인다. 예를 들면 대기업은 자금이 많기에 대기업과 합병하면 기존 기업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전략조정을 실현하다.

기업은 합병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어 경영의 다원화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새로운 경제와 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전통적인 산업의 기업들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체 경영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합병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방법이다. 쇠퇴해지고 있는 분야의 기업들은 흔히 합병을 통해 자금을 기타 신흥산업에 투자하여 자본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한다.

(4) 시장경쟁을 줄이고 자체 경쟁실력을 높인다.

때로 기업의 합병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 시장경쟁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이

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기회를 확대한다. 기업은 합병을 통해 업종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한 편 경쟁을 줄여 업종을 집중시키며 업종진입 장벽을 확대한다. 다른 한 편 업종에 부분적인 독점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독점지위를 빌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초과이윤을 이룰 수 있다.

(5) 특수자산을 취득한다.

기업에서 일종 특수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흔히 기업 합병의 주요원인이다. 예를 들면, 토지는 기업발전의 중요자원이다. 일부 실력 있고, 발전전망이 있는 기업들은 가능성이 작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일부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고 시장에서 불경기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와 우월한 지리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세기업들은 열세기업들을 합병하여 토지와 같은 특수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합병은 목표기업의 전문기술, 로고와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2.2.2 기업합병의 재무동기

(1) 가격이 과소평가된 목표기업들을 매입하고 합병기업 주주지분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일부 회사 주식가치들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합병 대상으로 하여 합병기업의 주주에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합병기업은 목표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반드시 매수시점 목표기업의 대체원가와 기업 주식시장 가격총액들 사이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합병의 가능성이 더 크고, 반대로도 역시 마찬가지다.

(2) 기업은 합병을 통해 거래원가를 낮출 수 있다.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제한된 이성, 미확정, 불완전한 정보를 갖춘 시장이기에, 합병은 어느 정도 거래비용을 낮추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시장진입 장벽을 이룰 수 있고 경쟁자들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거래절차를 줄여 중개 및 유동비용을 낮출 수 있고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3) 경영효율을 개선한다. 관리수준이 강하고 효율이 높은 회사 관리층은 기업 합병방식을 통해 저효율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을 수 있으며, 자산의 재구성으로 업무 통합으로 저효율 회사의 관리를 고효율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운영효율을 높여 가치를 창출한다.

(4) 절세목적을 이룬다. 기업 합병도 절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차입매수로 회사 재무역량을 높여 절세를 이룰 수 있다. 만약 합병기업의 수익이 많고 현금유동도 매우 충분하다면, 세법에서는 연속 적자를 보는 기업을 합병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낮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적자 기업을 합병하는 것은 세금방면의 수익을 이룰 수 있다.

(5) 융통력을 높인다. 부채율이 높은 회사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부채율을 낮출 수 있고, 재융통력이 강한 회사들을 합병할 수 있으며 융통력을 높이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전환경제 시대 특히 중국 현행의 제도 환경에서,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들과 비해 여러 방면의 경쟁적 우세를 갖출 수 있다. 상장 자격은 매우 드문 자원이기에 일부 기업들이 합병하는 목적은 바로 ‘껍데기 자원’을 얻기 위해서이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기업 합병 소식에 흔히 과격한 반응을 보여 주가의 큰 파동을 일으킨다. 일부 기업의 조종자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관련 합병을 진행하며 재구성을 통해 내부 거래를 하여 2급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목적을 이룬다. 경영실적이 못한 상장기업들은 상장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흔히 각종 기업합병 방식을 통해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2.3 기업 합병 두 가지 기본회계처리방법

2.3.1 합병방법의 발전

19세기 말~20세기 초반 미국은 이미 기업합병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대

량의 수평합병은 기업규모와 일부 기업의 시장할당을 증가시켰다. 일부 유명 대기업(예를 들어 듀폰 [DuPont], 아메리칸 타바코와 모빌사)들이 바로 그 시기 합병으로 생성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기업합병의 회계처리에서는 기업 합병의 두 가지 회계 처리방법-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회계절차위원회가 1950년에 공지한 40번 회계연구공보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는 여부'를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을 구별하는 새로운 표준으로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처음으로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으로 기업 합병에서의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였고 향후 기업의 합병 회계에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기업합병은 더 신속하고 대대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합병관련의 금액도 점점 더 커졌다. 다양한 회계합병방법을 사용한 이유도 이 때문에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계국제화 추세 때문에 지분통합법을 보편적으로 응용하는 미국도 지분통합법과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문제들을 계속 유지할 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2001년 6월 미국 재무회계준칙위원회에서는 『기업합병』과 『영업권 및 무형자산』 두 가지 재무회계준칙을 시행하였다. 모든 기업합병의 회계처리에 매수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정식으로 지분통합법을 폐지시켰다. 그리고 분기상각영업권을 취소하고 해마다 테스트 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준칙위원회는 기업합병방법 선택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경제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하였다. 국제회계준칙위원회에서 시행한 『기업합병』에서는 이미 매수와 지분통합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미국과 국제회계준칙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분통합법을 취소하였지만 이런 방식은 전 세계 범위 내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회계준칙위원회는 이미 지분통합법의 취소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2.3.2 매수법

매수법은 한 기업이 다른 한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합병을 처리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을 가정했을 때, 합병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순자산 얻는 행위는 일종 자산의 거래 행위다. 즉 기업합병은 합병기업이 일정한 가격으로 피인수기업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 화물, 미수금 등 자산항목들을 매수하고 피인수기업의 모든 부채(임시 부채 포함)를 부담하는 행위로 본다. 이런 가정에서 합병기업은 합병 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평한 가격으로 피인수기업의 순자산을 계산해야 하고 투자원가(즉 매수가격)에서 피인수기업 순자산을 초과한 공정가액부분을 영업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매수법에 의하면 상대방의 주주권을 매수하는 것은 직접 상대방 기업의 순자산을 매수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1) 매수법의 특징

- ① 합병기업에서 공정가액에 따라 얻게 된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거나 장기적인 주주권투자를 기록한다. 인수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반드시 각각 처리해야한다: 주식발행 대가로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 주식의 등기와 발행비용은 반드시 직접 주식의 공정가액을 탕감해야한다; 법무비용, 상담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 직접적인 비용은 순자산이나 투자원가를 증가시킨다. 기타 간접적인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확정된다.
- ② 합병비용에서 피 합병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공정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합병 제표에서 영업권으로 반영된다. 영업권은 정기적인 감가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감가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 ③ 합병기업이 피 합병기업 순자산에 대한 합병은 주주권 취득일부터 시작한다. 즉 합병기업의 이윤을 해당년도 자체로 얻은 이윤과 피인수기업의 합병일 후에 얻은 이윤을 포함한다.

(2) 매수법의 회계처리

①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에서의 회계처리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에서 합병 후 주체(존속회사)는 반드시 인수일에 합병에서 얻은 확인 조건에 부합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을 공정가액에 따라 주체의 자산과 부채로 확인해야 한다. 합병대가의 공정가액과 얻은 식별 가능한 자산 공정가액 사이의 차액이 이익이라면 영업권으로 확인되고 만약 손해라면 기업

합병 당기의 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산된다.

② 지주합병에서의 회계처리

주주합병에서 합병기업은 합병일에 먼저 장기적인 주주권투자를 확인해야 하며 각 자산부채 제표일에 합병재무 제표를 작성한다. 인수시점 합병기업은 합병일에 반드시 장기적인 주주권투자를 확인해야 하고 매수가격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 피인수기업은 주주권양도의 예비기록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합병기업은 비록 지배권을 얻게 되었지만 피인수기업은 여전히 독립된 법률주체와 경제주체로서 계속 경영을 해야 하고 양자는 각자 회계기록을 유지하여 각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합병기업은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회계기말에 합병기업과 피인수기업으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계실무에서 합병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수일의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합병기업은 향후 연간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편리하기 위해 흔히 매수일의 합병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매수일, 합병기업의 개별 재무제표 중 피 합병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주주권투자 항목과 피 합병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의 주주 지분은 모회사에서 소유하는 부분이며 서로 상각된다. 그들은 지주와 피 지주 관계를 반영하는 항목이다. 아울러, 인수일 합병기업에서 지급한 매수가격은 흔히 피 합병기업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동등하지 않다. 상각하기 전, 피 합병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관련 자산과 부채 항목에 대해 인수일 공정가액에 따라 다시 계산하고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조정과 상각을 한 후, 합병기업과 피 합병기업에서 같은 부분의 자산과 부채 항목을 상각한다.

2.3.3 지분통합법

(1) 지분통합법의 의의

지분통합법은 회사간의 매수가 아니라 두 회사가 그들의 순자산을 합병하여

동일한 연합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즉, 매수회사를 파악하기 힘들며 합병 전에 개발적으로 존재하였던 이익과 위험을 합병 후에도 두 회사의 주주가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피인수회사의 주주는 계속해서 합병회사의 주주가 된다.

지분통합법에서는 합병한 회사들의 자산, 부채, 자본을 지분통합일에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므로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 합병회사의 잉여금이 전부 또는 일부 승계된다. 지분통합일이란 지분통합에 의한 기업합병이 사실상 완료된 날, 즉 합병참여회사의 주주들이 합병된 실체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지분통합법에서는 합병 회사가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을 통합하는 것으로 봄으로 합병하는 회사들이 마치 결합 이전의 과거부터 존재하는 하나의 경제실체로 보고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주식의 교환에 의해 지배권을 합병한다는 가정을 하기에 합병대가의 대부분이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지급된다.

(2) 지분통합법의 적용범위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는 관건은 기업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표결권 있는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다. 표결권 있는 주식을 평등하게 교환할 수 없으면,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제회계준칙 이사회에서는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의 표결권 있는 보통주는 전부가 아니라도 최소한 대부분이 교환 혹은 연합경영에 참가해야 한다. 한 기업의 공정가액은 반드시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합병 후 각 기업의 주주들은 합병 후 주체에서 대체적으로 기존과 같은 표결권과 주식을 유지해야 한다.

(3) 지분통합법의 주요 회계처리

기업 합병이 지분통합법 조건에 부합할 때 관련된 회계처리는 반드시 지분통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는 기업 합병방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다양한 기업합병 방식에서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도 다

르게 된다.

①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에서의 회계처리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에서 합병에 참가한 각 기업의 개별적인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모두 합병 후 주체의 개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의 자산 총합과 부채 총합이기 때문에 합병 후 주체의 소유자 지분 총액도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 소유자 지분의 총합이다. 합병 후 주체의 주식자본은 외부에서 유동하는 주식의 액면가격 혹은 설정가격과 같아야 한다. 합병 후 주체의 유보이익은 흔히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의 유보이익 총합과 같다. 하지만 만약 합병 후 주체의 외부에서 유동하는 액면가격이나 설정가격이 합병 참여 각 기업에서 투입한 주식자본 총합보다 많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만약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에서 투입한 주식자본 총합이 합병 후 주체의 외부에서 유동하는 주식 액면 가치나 설정가치보다 많을 경우 초과부분은 합병 후 주체의 자본적립금에 포함된다.; 만약 합병 후 주체의 외부에서 유동하는 주식 액면 가치나 설정가치가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에서 투입한 자본총합보다 많을 경우 초과부분은 합병 후 주체 유보이익의 감당으로 된다.

지분통합법으로 처리할 경우 합병 후 주체(존속회사) 재무제표는 반드시 시작시기에 이미 기업합병을 완성할 것처럼 처리를 해야 한다. 즉 합병이 시작시기에 완성되었든지 아니면 중간시기 혹은 마지막 시기에 완성되었든지와 무관하게 합병 후 주체의 경영성과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합병에 참가한 각 기업의 경영성과 총합이기 때문이다. 합병에 참가한 각 기업들이 합병 전 회계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합병 후 주체(존속회사) 장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주합병에서의 회계처리

지주합병에서 합병기업은 합병일에 먼저 장기적인 주주권투자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각 자산 부채표일에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분통합법에 의해, 합병기업은 피 합병기업 순자산 액면 가치에 대한 할당

으로 한 장기적인 주주권투자를 확인한다. 그리고 발행하는 지분적 증권으로 주식자본과 자본적립금을 확인하며 피인수기업 유보이익의 장부가액에 대한 할당으로 유보이익을 확인한다. 피인수기업은 주주권양도의 비망록만 남기면 된다.

지분통합법에 의해, 주주권취득일의 합병재무제표는 반드시 합병자산 부채제표와 합병 유보이익제표를 포함해야 한다. 지분통합법에 의하면, 합병기업이 피인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주주권투자는 자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따라 확인되는 것이다. 때문에 합병자산 부채제표를 작성할 때 양자는 직접 상각될 수 있다. 자회사의 각 자산과 부채항목들은 전부 장부가액에 따라 모회사 자산 부채제표 내부의 해당 항목과 합병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다.

지분통합으로 합병업무를 처리하는 주요 절차는 매수법과 비슷하지만 지분통합법에서 피 합병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확정하는 목적은 영업권을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환주식의 수량을 확정하려는 것이다.

2.3.4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차이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은 기업 합병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1) 적용범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매수법은 합병기업이 자산, 부채부담 혹은 지분적 증권의 발행 등 방식으로 피인수기업 자산에 대한 권리와 경영지배권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분통합법은 주식교환이나 주주의 권리가 기업 합병에 적용되며, 흔히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 주주들이 순자산을 지배 하고 합병 후 주체에 대한 수익과 위험의 공유를 지속하며 합병기업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된다.

(2)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측정기초가 다르다

매수법은 피 합병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을 공정가액에 의해 새롭게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분통합법은 피인수기업 순자산이 여전히 기존 장

부가액으로 합병 후 주체 재무제표에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3) 영업권의 처리가 다르다

매수법에 의해 매수원가와 피 합병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사이의 차액은 합병 영업권으로 인정되며 지분통합법은 합병 영업권을 확인하지 않는다.

(4) 피인수기업 유보이익의 처리가 다르다

매수법에 의하면,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 유보이익은 합병 후 주체의 유보이익에 포함되지 않으며, 합병 후 유보이익이어야 주체의 미 처분 수익에 포함될 수 있다. 지분통합법에 의하면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후 유보이익은 전부 합병 후 주체의 유보이익에 포함된다.

2.3.5 두 가지 방법이 회계제표 및 관련 재무지표에 주는 영향

비록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보고 주체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산 부채표,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주는 영향은 매우 뚜렷하다.

(1) 재무상태표에 대한 영향

매수법에 의하면, 합병기업은 공정가액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자산, 부채와 임시부채에 새로운 측정을 하여 순자산의 순가치(자산과 부채의 증가 혹은 감량으로 표현됨)와 영업권(매수가격과 피인수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 사이의 정평형) 및 당기 손익의 변동(매수가격과 피인수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 사이의 부평형)을 반드시 합병기업 개별 재무제표(흡수 합병과 신설합병 경우) 혹은 합병재무제표(지주합병 경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지분통합법에 의하면, 합병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측정기초는 변하지 않고 계속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즉 자산과 부채 가격변동(공정가액과 장부)을 반영하지 않으며 합병 영업권을 확인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물가인상과 피 합병기업의 자산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매수법으로 보고된 순자산 가치는 흔히 지분통합법보다 크다.

합병재무제표의 측면에서 볼 때 매수법에 의하면, 기업의 합병 지불방식에 현금자산을 사용하거나 비 현금자산을 포기하거나 혹은 채권이나 지분성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합병기업의 주주지분 (미 배당이익 제외)은 바로 합병재무제표의 주주지분이며, 피인수기업이 합병시 이미 존재한 미 처분 이윤은 반드시 상각되어야 하며 합병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분통합법에 의하면, 합병기업은 주주의 권리에 대한투자를 확인할 때 피인수기업의 주식자본과 자본적립금 등 소유자 지분항목의 장부가액으로 주식자본과 자본적립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액면가와 주식 액면초과 가격 수익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에 이미 존재한 미 배당이익은 전부 합병재무제표에 포함된다.

(2) 손익계산서에 대한 영향

매수법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합병재무제표의 순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매수법은 합병제표 측면에서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피인수기업의 자산에 대해 가치증식부분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증식 후의 자산 가치에 따라 관련된 상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앞으로의 상각액도 따라서 증가될 것이며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면 앞으로의 상각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② 매수법은 합병 영업권을 확인하며 앞으로 영업권에 대한 감식을 테스트 하며, 감식준비 계상을 요구한다. 지분통합법은 합병 영업권을 확인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영업권의 감식 계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매수법은 단지 피인수기업이 합병 후에 실현한 이윤을 합병손익계산서에 포함하였고 지분통합법은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의 전체 연간 이윤을 전부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킨다. ④ 매수법은 흔히 현금이나 채무부담 방식으로 피인수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흔히 지분통합법에 따른 주식교환 합병보다 크다. 만약 피인수기업의 금년도 순이익이 이익일 경우 지분통합법의 이윤은 흔히 매수법보다 크다. 지분통합법에 인위적으로 당기 이윤을 조종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수익조종을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3) 재무지표에 대한 영향

지분통합법은 이윤이 높고 소유자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순자산 수익률과 주당 수익은 흔히 높아지게 된다. 매수법은 이윤이 낮고 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순자산 수익률과 주당 수익은 일반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마이너스 영업권이 나타나거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결과는 정반대다.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예를 들어 자산부채율과 유동비율)는 매수법에서 지분통합법보다 더 뚜렷하다. 원인은 바로 피 합병기업 부채의 평가 후 가치와 기존 장부가액 가치에 큰 차이가 있고, 자산의 평가가치도 흔히 기존 장부가액 가치보다 높기 때문이다.

상기 차이로 회계제표 정보의 차이를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계제표에서 반영되는 정보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합병업무를 처리하는 회계방법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2.3.6 국제회계에서 매수법을 사용하는 이유

(1) 대부분 합병업무에서 한 기업이 현금지급, 자산 등 방식으로 다른 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며, 이로써 매수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2) 기업의 합병은 합병 쌍방이 상의를 거친 공평적인 거래행위다. 이런 거래의 기초는 피 합병기업의 각종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가치가 아니다. 때문에 공정가액과 실제지급이 대가로 기록되어야 한다.

(3) 주식을 대가로 피 합병기업을 얻는 것은 지급 대가의 본질을 개변할 뿐 회계방법을 개변하는 이유로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식발행도 합병의 일종 대가이고 공정가액으로 평정된다.

(4) 매수법은 합병업무의 경제본질을 보고하기에 전통적인 회계원칙에 의해 매수 자산을 처리한다.

(5) 지분통합법에는 합리적인 개념의 기초가 부족하다. 어떤 조건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

(6) 지분통합법에 의해, 기업은 연말에 기업합병을 시행하느라 신속히 이윤

을 확대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이윤변화의 수단을 제공한다.

(7) 매수법의 이윤은 상대적으로 낮고, 물가 변동에서의 현행 비용 향상에 대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한다. 지분통합법에서의 높은 이윤은 기업의 과도적인 분배를 초래하게 되어 기업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자원을 늘리는데 불리하다.

2.4 중국의 새로운 회계준칙이 기업 합병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기업합병 회계처리 규범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 재무부는 2006년 2월 15일에 『기업회계준칙 제20번-기업합병』을 공포하여 처음으로 기업합병의 확인, 수치와 관련한 정보 노출에 대해 전면적인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준칙에서,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병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분통합법을 기초로 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고, 비 동일지배 하 기업합병에 대해 사용한 것은 매수법을 기초로 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2.4.1 동일지배 하에 기업합병 회계처리 방법의 규정

새로운 회계준칙 규정에 의하면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병에서 합병기업이 기업합병으로 얻은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합병일 피 합병기업의 장부가액 측정에 따라야 한다. 합병기업이 얻은 순자산 장부가액과 지급한 합병대가 장부가액(혹은 주식발행 액면총액)의 차액은 반드시 자본적립금을 조정해야 한다. 자본적립금이 상각에 부족한 경우 유보이익을 조정한다.

동일지배 하의 기업합병을 두 개 혹은 여러 개 합병에 참여한 기업 지분의 새로운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최종지배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형의 기업합병은 일정한 정도로 기업그룹 전체 경제이익의 유입과 유출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최종 지배 기업이 합병 전후 실제적으로 지배 하는 경제자원은 변하지 않으며 관련된 거래사항들도 판매 혹은 매수업무로 처리될 수 없다. 때문에 동일지배 하의 기업 합병에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은 지분통합법과 비슷하다.

2.4.2 비동일 지배하에 기업합병 회계처리 방법의 규정

비동일 지배하의 기업합병의 회계처리는 주로 합병기업과 인수일 확정, 기업합병 원가의 확정, 합병에서 얻게 되는 각종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확인과 측정 및 합병가격차이의 처리를 포함한다.

(1) 비동일 지배하의 기업합병 처리원칙

① 합병기업을 확정한다.

매수법은 합병기업의 각도에서 시작하여 거래를 통해 합병기업은 피 합병기업의 순자산 혹은 순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고, 얻게 된 자산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 합병기업에서 확인하지 않은 자산과 부채도 역시 포함된다. 기업합병의 합병기업을 판단할 때 반드시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기업 합병 후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들의 투표권, 합병 주체관리기구 및 고급관리인원의 구성, 지분교환 등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② 인수일을 확정한다.

인수일은 합병기업이 피 합병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날짜며, 즉 기업합병 거래 과정에서 지배권 이전이 발생하는 날짜다. 기업합병 방식의 다양함에 따라 지주합병 상황에서 합병기업은 반드시 인수일에 기업합병으로 형성된 피 합병기업에 대한 장기주주권투자를 확인해야 한다.

③ 기업합병 원가를 확정한다.

기업합병 원가는 합병기업이 기업합병을 위해 지급한 현금 혹은 비 현금자산, 발행하거나 부담한 채무, 발행한 지분적 증권 등이 인수일의 공정가액 혹은 기업 합병에서 발생한 각종 직접 관련 비용의 총합이다. 여러 차례 거래를 통해 실현된 기업합병 원가는 각 거래 원가의 총합이다.

(2) 기업 합병 원가와 합병에서 취득한 피 합병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 할당액 차액의 처리

① 기업합병 원가가 합병에서 취득한 피 합병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

가액 할당액의 차액보다 많으면 영업권으로 확인된다. 영업권으로 확인된 후 소유 기간에 상각할 수 없으며 기업은 반드시 감식테스트를 해야 하고,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식 준비 계상을 해야 한다.

② 기업합병 원가가 합병에서 취득한 피 합병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 할당액의 차액보다 적으면 반드시 합병 당기 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회계준칙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합병에서 취득한 각종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과 합병대가인 비 현금자산 혹은 발행한 지분적 증권 등 공정가액 가치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재조사 결과에 확정된 각종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공정가액 및 기업 합병 원가가 적합하다고 나오게 되면, 기업합병 원가가 합병에서 취득한 피 합병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이 할당액보다 낮은 차액을 합병 당기 영업 외의 수입에 포함시켜야 하고 회계제표 주석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 흡수합병 경우, 상기 기업합병으로 형성된 차액은 반드시 합병 당기 합병기업의 개별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합병 지배 경우 당기 합병 손익계산서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3) 인수일 합병재무제표 작성

비동일 지배하의 지주합병에서 합병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수일에 합병자산 부채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인수일부터 지배할 수 있는 경제자원 상황을 반영한다. 합병대차대조표에서 합병을 통해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각종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는 반드시 인수일 공정가액으로 수치화해야 하고, 장기주주의 권리투자의 원가가 합병에서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 할당액보다 큰 차액은 합병 재무제표의 영업권으로 반영된다. 장기주주의 권리투자에서 원가가 합병에서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보다 적은 차액은 반드시 합병 당기 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수일에는 합병손익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차액은 합병대차대조표에 나타나며, 합병자산 부채제표의 이익준비금과 미배당이익을 조정해야 한다. 합병기업인 모회사는 관련 회계처리를 진행한 후 반드시 단독으로 비망록을 설치하여 인수일에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각종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 및 기업합병원가가 합병으로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자산 공정가액의 할당액보다 많아 확

인된 영업권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혹은 기업합병 원가가 합병으로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액의 할당액보다 적어 당기 손익에 기록된 금액을 기록하여 기업합병 당기 및 향후 합병재무제표 작성의 기초로 할 수 있다. 기업의 합병 당기기말 및 향후 기간은 합병 재무제표의 피인수기업 자산과 부채 등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수일에 확정된 공정가액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계산한 결과다.

Ⅲ. 화태주식회사와 Norskeskog회사 합병 사례분석

3.1 합병기업의 기본상황

3.1.1 합병기업의 기본상황

(1) 합병기업 개요

산동성 화태종이주식유한회사(이하 화태주식으로 약칭함)는 1993년 산동성 경제체제개혁위원회 허가를 받아 동영시(东营市) 종이공장에서 시작하여 지정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의 주식유한회사다. 1996년 관련 규정에 따라 규범하여 산동성 인민정부는 산동성정부주식[1996]250번 허가증서로 회사에 대한 규범확인을 진행하였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회사 주식의 총수는 10247.3308주였다. 2000년 9월 28일 상해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였다. 주식의 약칭은 화태주식이고 주식코드는 600308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사 총자산은 982,236.75만위안이며 순자산이 374,051.67만위안이다. 주당 순자산이 6.82위안이고 총주식자본이 548,645,233주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허가 [2012]712번 문서허가로 회사는 2012년 9월 22일에 A주식 10000만주를 공개 발행하였고 자금모집총액이 126,600만 위안이며, 발행 등 비용을 차감한 후 자금모집순액은 122,859만위안이고, 모집자금은 이미 2012년 9월 28일에 전부 지급되었다. 만룽(万隆)아시아 회계사무소유한회사에서 만아회업자(2012) 제2581번 『자산조사보고』를 제출하였다. 발행 후 회사 총주식자본은 648,645,233주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판매제한 조건의 유동주식이 154,209,015주로서 23.77%를 차지한다. 판매제한 조건이 없는 유동주식이 494,436,218주로서 86.23%를 차지한다.

화태주식의 경영범위는: 종지제조; 종이제품 및 종이원재료가공, 열전, 화공제품(화학위험품제외) 및 기계제조, 판매; 펄프의 생산, 판매; 본 기업 자체생산 제품 및 관련기술의 수출입 업무다.

화태주식은 주로 신문지, 도화지의 생산과 판매하며, 2011년까지 총생산능력이 160만 톤에 도달하였다. 그 중 신문지의 기존 생산능력이 120만 톤이고, 국내 신문지 시장 1/3의 할당을 차지하며 국내 최대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신문지 생산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공장 규모가 가장 큰 신문지 생산 기지다.

(2) 합병기업의 약식 재무제표와 주요 재무상황

<표1> 화태주식회사 2009-2012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단위: 만위안)

항목	2012/6/30	2011/12/31	2010/12/31	2009/12/31
총자산	999167.55	982236.75	916780.58	866658.80
총부채	586762.88	580579.80	537985.45	541242.28
주주주권익합계	412404.68	401656.95	378795.13	325416.52
	2012/1-6	2011	2010	2009
주요영업수입	260880.39	600629.32	603214.01	424303.22
영업이익	11690.31	32595.61	66041.50	61588.63
순이익	14039.59	37827.35	51218.11	44786.07

출처: 화태 주식회사 상하이 증권 거래소 공지

<표2> 화태주식회사 2009-2012년 주요 재무상황

항목	2012/6/30	2011/12/31	2010/12/31	2009/12/31
자산부채비율	58.73%	59.11%	58.68%	62.45%
	2012/1-6	2011	2010	2009
주당 순이익	0.25	0.67	0.91	0.77
자기자본수익률	3.59%	9.75%	14.07%	14.91%

출처: 화태 주식회사 상하이 증권 거래소 공지

3.1.2 피 합병기업의 기본상황

(1) 피 합병기업 개황

Norskeskog(하북, 河北)종이유한회사(이하 Norskeskog로 약칭)는 하북성 석가장시(石家庄市) 조현(赵县)에 위치해 있으며, 싱가포르Norskeskog범아시아 지역 개인유한회사에서 전부 지주하는 2003년 9월에 설립한 외상독자기업으로써 회사 자본금은 1.97억 달러다. 회사제품은 고급 칼라인쇄 신문지로서 설계 규모는 연간 생산량 30만 톤이다. 주요 원재료는 100% 회수 폐지다. 회사는 2004년 3월 18일에 건설공사를 시작했고, 2005년 7월 1일에 공사를 완 성하여 생산을 시작하였다. Norskeskog는 전 세계적으로 신문지 생산능력이 1위를 차지하는 국제적인 종이생산회사다. 회사에는 세계일류의 선진설비를 갖추었고 신문지 생산기계도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기계 중 한 가지다.

(2) 피 합병기업 2012년 6월 30일 간략 재무상태표(표3)와 2012년 1-6월 손익계산서(표 4)

<표3> Norskeskog 2012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항 목	기 말 잔 액	항 목	기 말 잔 액
자 산	23.85	부채	18.64
		자본금	16.30
		배당수익과 기타지분	-11.09
총 자 산	23.85	부채와 지분합계	23.85

<표4> Norskeskog 2012년 1-6월 손익계산서

(단위: 만위안)

항 목	당 기 금 액
매 출 액	7502
매 출 원 가	-7083
매 출 총 이 익	420
기타 비용, 순익과 세금합계	-1545
당 기 순 이 익	-1125

출처: 위몽제(魏梦杰), 상해 증권보, 2012-09-27

3.1.3 합병방안의 관련 내용

산동 화태종이주식유한회사 제6기 이사회 제4차 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싱가포르 Norskeskog와 주주권 양도협의를 체결하였다. 회사는 싱가포르

Norskeskog에서 갖고 있는 Norskeskog 100% 주주권을 매수하였다. 매수는 이미 2012년 10월 23일에 하북성 상무청외상 [2012]135번 문서허가를 받았다.

1. 매수방안의 주요 내용

(1) 매수금액의 지급방식:

- ① 화태가 반드시 싱가포르 Norskeskog에 지급해야 할 주주권 가격은 인민폐 1위안이었다.
- ② 화태는 대출은행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당시 사용이 가능한 인민폐 6.77위안으로 Norskeskog에 화태대출금을 제공하여 Norskeskog의 일부 은행채무를 상환하였다.
- ③ 화태는 인민폐 2.48억 위안의 은행용자채무를 Norskeskog에 남겨두었다.

(2) 채무 재구성 관련의 규정

- ① Norskeskog와 화태는 다음과 같은 협의를 이루었다. 본 협의 조항에 따라 Norskeskog의 용자채무를 재구성 하여 인수 확정 시일부터 Norskeskog 남긴 은행채무와 화태 차입금 외에 기타 아무런 용자채무가 없다; 남긴 은행채무 채권자 외의 제3자를 위해 저당을 하거나 기타 권력을 제한할 자산은 없다.
- ② 대출은행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Norskeskog의 용자채무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i) 화태에서 제공하는 화태차입금과 현금 조정금은 반드시 Norskeskog의 은행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남긴 은행채무를 Norskeskog에 남겨두어야 한다. (ii) 싱가포르 범아시아는 반드시 대출은행이 채무 상환 후 Norskeskog에 채무청산 문서를 제출할 것을 확인해야 하고 관련 대출은행이 Norskeskog자산에 설립한 저당이나 기타 권력제한을 철수하고 해제할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싱가포르 범아시아와 관련 측에서 Norskeskog 이익을 위해 제공한 모든 보증, 배상, 담보지분과 유사한 담보들을 철수하고 해제해야 한다. (iii) 본 협의의 용자채무 재구성으로 생성하게 되는 세무책임에 대해 화태, 싱가포르범아시아와 Norskeskog는 각자 부

담해야 한다.

③ Norskeskog자산. 교부할 때 Norskeskog의 모든 자산(모든 미수금 포함)은 여전히 회사에 남겨둔다.

④ Norskeskog의 채무. 화태차입금, 현금조정금과 주주권가격을 줄이지 않는 전제조건에서 Norskeskog의 교부할 때 모든 청산되지 않은 응답금과 기타 채무는 여전히 Norskeskog에 남겨두어야 한다.

2. 합병의 회계처리 결과

화태주식의 2012년 6월 30일 파장시세는 10.74위안이며 총 주식자본은 548,645,233주다. 화상해증권거래 2012년 6개월 공지에 의한 화태주식 2012년 6월 30일의 관련 재무상황(표5)는:

<표5> 화태주식회사 2012년 1-6월 손익계산서

항목	당기금액
순이익	14039.59만원
순자산	412404.68만원
주당순자산	7.51원
주당이익	0.25원
PER	42.96
PBR	1.43

상기 화태주식의 관련 자료에 의해 이 번 합병이 마침 2012년 6월 30일에 완성될 거라 가정한다. 2012년 6월 30일까지 Norskeskog의 자산총액이

23.85억위안이며 순자산이 5.21억위안이다. 『기업회계준칙』 - 『기업합병』의 규정에 의하면: 비동일 지배 하의 합병에서 합병기업은 인수일 기업합병 대가로 지출한 자산, 발생하거나 부담한 부채에 대해 반드시 공정가액에 의해 수치화되어야 하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재조사를 거친 후 합병기업 합병원가가 합병에서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액 할당액보다 적은 차액은 당기 손익에 포함된다. 순자산 5.21억 위안이 공정가액이라 가정하면 <기업회계준칙>에 의해 반드시 매수원가 1위안과 Norskeskog 순자산의 차액을 당기 손익에 포함시켜야 한다. 때문에 화태주식의 순이익은 5.21억 위안 증가될 것이고, 관련 재무상태표 다음과 같다(표6):

<표6> 화태주식회사 2012년 1-6월 주요 재무 상황 (단위: 만원)

항목	합병전(A)	합병후(가상)(B)	차이(B-A)
순이익	14039.59	66139.59	52100증가
순자산	412404.68	464404.68	52100증가
주당순자산	7.51	8.46	0.95증가
주당이익	0.25	1.21	0.95증가
PER	42.96	8.88	34.08감소
PBR	1.43	1.27	0.16감소

상기 표를 보면 화태주식 사례의 진행은 기업회계준칙의 관련회계처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2년 당기 순이익 5.21억 위안을 증가시켜 2012년 주당 수익이 0.95위안 증가하도록 한다. 이는 회사 관련 이익의 각 방면에서 기대하는 결과다.

3.2 합병 방안의 다양한 선택분석

3.2.1 인민폐 1위안 합병방안

화태주식이 싱가포르 범아시아에 지급한 주주권 가격은 인민폐1위안이며 즉, 본 사례에서 실시된 방안이다. 화태주식에서 Norskeskog 100% 주주권과 관련의 모든 권력과 의무를 매수하였고, 실제 가격은 9.25억 위안이다; 그 중에서 6.77억 위안은 Norskeskog의 일부 용자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2.48억 위안의 은행용자 채무를 Norskeskog에 남길 것이다. 본 방안에서 화태주식이 지급한 9.25억 위안 금액의 본질은 9.25억 위안으로 Norskeskog를 매수한 것이다.

(1) 매수방안이 당기 제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헌

합병당일, 화태주식의 장부가액 장기주주권투자의 가치는 1위안이다. Norskeskog의 장부가액 가치가 공정가액이라 가정하면 이번 거래는 『기업회계준칙』 - 『기업합병』의 규정에 따라 원가를 1위안으로 하였다. 당기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액은 5.21억 위안이고 거래로 발생한 당기 수익은 약 5.21억 위안이며, 모회사와 화태그룹에 당기손익 5.21억 위안을 증가하게 하였다. 이 결과는 이미 상기 관련 제표에서 관련된 증명을 얻을 수 있었다.

(2) 이번 매수가 채무제표에 주는 후기영향

① 악성부채가 제표에 주는 영향

이번 매수방안에서 화태주식은 6.77억 위안으로 Norskeskog의 일부 용자채무를 상환할 것이고, 자연적으로 화태주식의 미수금 6.77억 위안을 증가시킨다. Norskeskog는 생산을 시작하여서부터 이번 매수 전까지 줄곧 적자 상태에 있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회사 자산총액은 23.31억 위안이었고 부채총액은 19.96억 위안이였으며 순자산은 3.34억 위안이였다. 2011년 주요경영업무 수익 10.21억위안, 이윤 5.261억위안을 이루었고, 순이익 -1.43억 위안이였다.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바로 모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은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화태주식이 관리방면에서 최적화,

개혁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적자 상황을 수익으로 돌릴 수 없으며, 오히려 전체 그룹에 지장 주게 된다. 이런 미수금도 악성 부채로 될 것이다. 만약 Norskeskog에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다면 화태주식은 악성 채무를 계상해야 하고, 모회사 화태주식 제표에는 자산가치의 하락 손실 6.77억 위안이 늘어나게 된다. 화태주식합병 회계제표를 작성할 때도 화태주식과 Norskeskog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이기 때문에 모회사는 자회사에서 계상한 악성 부채를 상각하려 하기에 최종으로 합병제표 순이익에 아무런 영향도 없게 된다.

② Norskeskog 경영상황이 화태주식에 주는 영향

기업회계준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비동일 지배 하의 합병에 매수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번 매수 전 Norskeskog의 경영상황은 화태주식 당기 손익 계산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합병일 후 Norskeskog가 여전히 적자를 보게 되면 주식회사 합병제표의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며 화태주식의 연간 보고에 일정한 지장을 주게 된다; 만약 관리를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약하여 적자를 보완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으면 화태주식 연간보고에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다.

3.2.2 인민폐 6.77억 주식구매 방안

화태주식이 인민폐 6.77억 위안 가격으로 싱가포르 범아시아에서 소유하는 주주권을 매수하고 Norskeskog를 위해 은행의 6.77억 융자채무를 지급하며, 화태주식이 2.48억 위안의 은행융자채무를 Norskeskog에 남겨둔다고 가정한다.

『기업회계준칙』 - 『기업합병』의 규정에 의하면 화태주식의 장기주주권 투자가 6.77억을 증가한다. 가격이 Norskeskog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많기 때문에 당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합병일 이 거래는 그룹회사에 5.21억 위안 장부가액 이윤을 증가시킬 수 없다. 합병일 후, Norskeskog는 여전히 적자로 화태주식에 일정한 지장을 주며 그룹의 당기수익을 줄이기도 한다.

3.2.3 인민폐 6.77억 기부방안

화태주식이 인민폐 6.77억위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Norskeskog에 투입하여 은행 6.77억 위안 융자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돕고, 1위안 가격으로 주주권을 매수하며 2.48억 위안을 은행채무를 Norskeskog에 남겨둔다고 가정한다.

이 방안은 Norskeskog가 당기수익 6.77억 위안을 증가하게 할 것이며, 이와 동시 모회사 당기손실은 6.77억 위안이다. 왜냐하면 합병제표를 작성할 때 서로 상각되기에 화태 주식 합병제표 손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1위안 매수가격은 기업회계준칙 처리방법에 따라 마찬가지로 화태주식 당기 손익이 5.21억 위안 증가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 이후 악성 부채가 생기는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방안의 실시로 인해 Norskeskog로 하여금 당기 세금 소득액 6.77억 위안이 증가되게 한다. 비록 Norskeskog의 미배당이익과 기타 소유자 지분이 -11.09억 위안이지만 회사가 설립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5년 시간이 지났다. 모든 적자가 세금 전에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방안 때문에 회사는 기업소득세를 지급해야 할 위험을 보게 되고 Norskeskog가 향후 이윤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적자를 이번의 현금기부소득으로 많이 보완되어 회사 향후의 세금부담을 증가하였다. 모회사 화태주식에 대해 말하자면 쌍방은 모두 독립적인 납세 주체다. 인민폐 5.21억 위안의 현금 기부는 기업소득세에 따라 세금납부 전에 지급될 수 없으며 미수금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악성 부채 생성은 세무신고를 거칠 수 있는 거라면 세금 전에 지급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회사 손익과 현금유동에 다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 가지 방안이 합병 후 화태주식제표에 주는 영향 비교는 다음과 같다(표 7):

<표7> 세 가지 방법 화태주식회사에 대한 영향 비교

방 법 종 류	2012년 순이익	2012년 PER	2012년세금비용
인민폐1위안합병 방안	5.21억원증가	감소	변하지않음
인민폐6.77억 주 식구매방안	없음	없음	변하지않음
인민폐6.77억 기 부방안	5.21억원증가	감소	세금비용증가

3.3 합병방안 회계방법의 다양한 선택에 비교분석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민폐1위안 매수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며 전체 화태주식에 대해서도 가장 유리하다. 이 방안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결과가 있게 된 원인은 Norskeskog 순자산 공정가액 5.21억 위안과 투자원가 인민폐1위안 사이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때문이다. 『기업회계준칙』 규정에 의하면, 합병기업이 합병원가가 합병에서 취득한 피인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액 할당액보다 적은 차액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기업회계준칙』의 이런 처리방법에 사용한 것은 매수법원리다.

3.3.1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관련 회계처리

(1) 지분통합법과 매수법 회계처리 및 관련 비교

합병기업: 산동화태종이주식유한회사

피 합병기업: Norskeskog 종이유한회사

제1절의 관련자료와 산동화태종이주식유한회사 2012년 6월 30일 중기 제표에 따라 각각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회사 합병제표를 작성한다.

첫째, 2012년 6월 30일 합병 자산 부채표 및 재무상황의 다양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표 8).

<표8> 화태주식회사와 Nroskeskog 2012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

항목	회 태 주 시 회 사	Nroskeskog	매수법으로 합병(A)	지 분 통 합 법 으로 합병(B)	차이 (A-B)
자산	99.92	23.85	123.77	123.77	0
부채	58.68	18.64	77.32	77.32	0
주식 자본	5.49	16.30	5.49	5.49	0
자본적립금	14.84	-11.09	14.84	20.05	-5.21
이익잉여금	4.12		4.12	4.12	0
미배당이익 소유자권익	14		19.21	14	5.21
합계	38.45	5.21	43.66	43.66	0
소수 주주					
지분	2.79		2.79	2.79	0
부채와 자본					
총계	99.92	23.85	123.77	123.77	0

주: 가정 Neoskeskog의 공정가액=Neoskeskog의 장부가액

표에 의하면, 매수법에서 매수원가가 피 합병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차액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때문에 화태주식 합병제표의 미 처

분 이윤 5.21억 위안을 증가한다. 지분통합법에서 매수원가가 피 합병기업 순자산 공정가액보다 낮은 부분은 자본적립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태주식 합병제표의 자본적립금은 5.21억위안 증가된다.

둘째, 2012년 1월—6월 합병 손익계산서 및 손익의 다양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표9).

<표9> 화태주식회사와 Nroskeskog 2012년 1-6월 손익계산서(단위: 만원)

항 목	화 태	Nroskeskog	매수법으로 합병 (A)	지분통합법 으로 합병 (B)	차 이 (A-B)
매출총이익	260880.39	7502	260880.39	268382.39	-7502
기타수입			52100.00		52100
순이익	14039.59	-1125	66139.59	12914.59	53225

첫 번째는 매출총이익항목이다. 지분통합법에서 피인수기업의 당해 연간 매수 전 수입과 관련비용도 합병제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매수법을 사용하면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 경영성과는 합병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분통합법으로 합병 후 화태주식은 주요경영업무 수입 7,502만위안을 증가하였다.

두 번째는 경영 외의 수입항목이다. 매수법으로 매수원가가 피 인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낮은 부분은 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지분통합법에서 매수원가가 피 인수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낮은 부분은 자본적립금에 포함된다. 때문에 매수법에서의 경영 외 수입은 지분통합법보다 5.21억 위안 많다.

세 번째는 순이익항목이다. 매수법에서 합병기업이 합병일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합병 전의 경영성과는 재무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경영 외 수입부분 52,100만위안만 증가하여 합병일 순이익은 66,139.59만위안이다. 지분통합법으로 합병기업은 합병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합병

기업 및 피인수기업의 합병 시점부터 인수일까지 실현한 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Norskeskog회사의 순이익은 -1,125만 위안이기 때문에 합병 후 순이익은 12,914.59만위안으로 매수법보다 순이익이 53,225만위안이다.

(2) 두 가지 회계처리결과의 관련 재무상황 비교

상기 제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처리방법이 2012년 화태주식 제표 당기 순이익에 주는 영향 차이가 53,225만 위안이다. 회사 2012년 6월 30일의 총 주식자본 548,645,233주로 계산한다면 당기 주당 손익에 대한 영향은 0.97위안이다.

두 자기 회계처리결과의 관련 재무지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을 가졌다 (표10).

<표10>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으로 합병후 화태주식회사 재무지표의 차이

항목	매수법(A)	지분통합법(B)	차이(A-B)
순자산	43.66억원	43.66억원	0
순이익	66139.59만원	12914.59만원	53225만원
주당순자산	7.96원	7.96원	0
주당수익	1.21원	0.24원	0.97원
주가 수익률	8.88	44.75	-35.87
PBR	1.35	1.35	0

표를 보면,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은 주요 재무지표에 선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 가지 처리방법은 주당 순자산에 영향이 없다. 매수법으로 주당

수익은 0.97위안 증가하고 회사의 주가 수익률이 지분통합법보다 35.87 하락한다. 상기 비교에 의하면 매수법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당기 주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당수익과 순자산 수익률 지표 모두 지분통합법의 데이터보다 이상적이다. 그리고 높은 제표 수익은 관리층의 실적을 높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직접적인 경제이익과 사회지위를 강화시키면 회사의 주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3.3.2 각 방면 이익에 대한 생각

(1) 은행

Norskeskog의 은혜채무는 9.25억 위안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은행측에서는 이 채무들로 악성 부채가 일어날 위험을 낮추고, 은행의 불량대출비율을 줄일 수 있었다. 만약 이번 합병이 없었더라면 은행의 압력은 매우 컸을 것이다. 비록 은행대출은 관련 담보와 싱가포르회사의 담보가 있지만 모든 채무를 상환 받으려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이며, 일정한 악성 부채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아울러 사법절차를 거치는데도 많은 시간과 재력이 소모된다. 이런 일들은 은행측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합병에서 은행 기존의 대출은 상환 받게 되었고, 자금의 압력을 상장회사에 넘겨주고 불량대출 위험을 낮추었다. 이는 은행에 매우 유리하다. 때문에 은행은 이번 합병에서 이익을 보게 되었다.

(2) 싱가포르 범아시아 회사 및 회사 주주

유럽의 일부 기업들은 잠재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해외에서 3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금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북 Norskeskog외에, 노르웨이 Norskeskog는 중국 상해의 연간 생산능력이 14.5만 톤인 공장의 약 50% 주식을 미국 제1대 폐지경영업체-미국잠재력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노르웨이 Norskeskog는 2007년부터 범아시아 철수를 시작하였고, 한국에 있는 연간생산능력이 100만 톤인 종이공장과 태국에 있는 연간생산능력이 10여만 톤인 신문지공장을 매각하였다. Norskeskog종이유한

회사는 생산을 시작하여서부터 합병 전까지 줄곧 적자를 보고 있었다. 즉 2011년에 톤당 신문지를 5800-6100위안으로 판매해도 여전히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다. 2012년 1-8월에 주요경영업무 수익 48,354.38만 위안을 이루었고 주요경영이윤 -1,901.85만 위안, 순이익 -17,736.01만위안(상기 데이터는 회계사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루었다. 이런 경영상황은 어느 투자자든지 자신감을 잃게 만들 것이다

금융위기가 일어난 후 해외 은행들은 전 세계 경제와 Norskeskog 전망에 매우 비관적인 태도였고 자금철수를 서둘렀다. 싱가포르 범아시아 회사는 할 수 없이 Norskeskog를 저가로 양도하였다. 현재 전 세계 경제환경으로 보면, Norskeskog가 적자를 보완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시장판매로 볼 때 시장확장이 불리하기에 2012년 가동률은 55%좌우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판매시장은 주로 광둥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제품의 운송비용은 톤당 300위안에 가까웠다. 각종 원재료 구입원가가 시장의 평균수준보다 많이 높았다. 은행의 대출은 17억 위안으로 높아졌고 자산의 부채율도 55%정도 도달하였다. 해마다 이자 지출이 8,000만 위안이었다. 이번 화태주식은 합병 계약서에서 은행채무에 대해 이미 특별히 언급을 해놓았으며 인수한 후 기존의 은행채무는 이미 Norskeskog에서 해결하였고 기타 모든 부담도 모두 해결되었다. 싱가포르 범아시아회사는 드디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현재상황으로 보면, 싱가포르 회사가 Norskeskog에 대한 투자는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합병의 성공으로 싱가포르회사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싱가포르 회사 주주들한테도 매우 유리하다.

(3) 합병기업-화태주식

화태주식은 이번 합병에서 인민폐1위안의 합병방안을 사용하여 합병재무제표를 매우 보기 좋게 만들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이번 합병의 회계처리는 회계준칙 관련 규정의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 당기 주당 수익도 크게 증가하게 하였고, 회사의 주가 수익률도 대폭 줄어들어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회사가 앞으로 관련 차입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라도 회

사 합병제표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태주식 2013년 3월 24일엿 공지한 2012년 연간 심사보고에 의하면 상해 만룽(万隆)자산평가유한회사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에 의하면, Norskeskog는 2012년 10월 31일에 순자산 평가가치가 876,472,749.77위안에 도달하였다. 때문에 이번 합병이 실제적으로 당기손익에 준 영향은 8.74억 위안에 도달하였다.

현재 종이시장의 상황으로 보면 현재 투자원가로 33만톤 신문지 생산라인 한 가지 투자로만으로도 인민폐 20억 위안이 필요하다. 합병에서 토지, 공장 과 조립 사무시설 등은 모두 기존 원가로 계산되며 다시 평가하면 대폭 증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화태주식의 관련 책임자 소개에 의하면 이번 합병은 Norskeskog의 자산품질과 전략적 지위를 보고 진행된 것이다. 이전의 합병 후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 생산하는 것과 달리 회사는 Norskeskog에 대한 이전계획이 없다. 현지에서 바로 직접 생산에 투입할 것이며, 회사가 있는 하북 근처의 북경, 천진, 산서, 내몽골 등 지방의 고객들과 연결을 취할 것이다. 화태주식은 상기 지역들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Norskeskog를 통해 근처에서의 생산을 실현한다. 운송비용만 해도 톤당 50위안을 절약할 수 있다. 화태주식은 합병 후 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3로 높아져 전 세계 가장 큰 신문지 생산기지로 되었다. 아울러 Norskeskog의 모든주주권을 인수 하여 회사의 신문지 생산능력을 더 강화시켜 회사의 신문지 시장점유율을 높여 시장에서의 회사 상품가격과 원재료 구입 가격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갖추게 되었다. 2013년 회사는 관련 신문지 가격을 높였고 관련 신문사들도 가격 인상을 받아들였다. 회사의 시장 지배력도 이번 합병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화태주식이 Norskeskog 경영을 개선시킨 결과도 매우 뚜렷하다. 화태주식의 연간제표에서 Norskeskog 제4분기 경영은 적자를 보완하여 수익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장회사에 공헌한 순이익이 2149.74 만위안이며 이는 상장회사의 이윤을 확실히 높여주었고 화태주식의 장기발전에도 매우 유리하다.

(4) 화태주식 중소주주들의 이익

주식시장이 화태주식 1위안 인수방안에 대한 반영상황을 한 번 살펴보자. 화태주식의 합병상황은 상기 내용에서 이미 소개한 바이고, 이런 확장을 투자자들은 인정하는가? 2012년 10월 26일 화태주식회사는 Norskeskog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그 전 거래일 파장시세는 13.22위안이었고 10월 26일의 파장시세는 12.88위안으로 오히려 0.34위안 떨어졌다. 당일 상해증권 종합지표 증폭은 0.06%로 3109.57에 파장하였다. 투자자들은 이번 투자에 별로 큰 반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중소투자자들은 이번 합병이 화태주식 수익 증가에 주는 영향에 대해 회사 고급 관리층들처럼 자신만만하지는 않다.

회사는 2012년 9월 22일에 A주식 10,000만주를 공개 발행하였고 자금을 총 126,600만위안 모집하였다. 발행등 비용을 공제한 후 모집한 총 자금이 122,859만위안이었다. 발행 후 회사의 총 주식자본은 648,645,233주로 늘어났다.

이번 추가발행 시기와 합병 시간은 매우 잘 매칭 되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떠오르게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회사가 주식을 추가발행하는 것은 새로운 항목투자를 위해서이고 실제로 6억여 위안은 Norskeskog을 위해 빚을 갚는데 쓰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추가발행으로 얻게 된 자금의 용도에 대해 중소주주들은 발언권이 없고 사용에 대해서도 지배권이 없다.

(5) 화태주식 중소 주주 및 잠재적인 주주들에 대한 생각

① 회사 2012년 재무제표를 1위안 인수 방안으로 회사의 당기 순수익 5.21억 위안을 이루었지만, 이것은 단지 제표 수익이고 회사 일상 경영 수익의 진실적인 반영이 아니고 지속성이 없다. 화태는 대출은행의 동의를 거쳐 당일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인민폐 6.77억 위안으로 Norskeskog에 차입금을 제공하여 일부 Norskeskog의 은행 채무를 상환한다. 화태는 인민폐 4.28억 위안의 은행용자 채무를 Norskeskog에 남겨두었다. 이는 제표의 회사 재무비용을 높여 회사 재무위험을 커지게 한다.

② 합병은 회사 수익을 증가시킨다. 사실 화태주식의 연간 제표를 보면

Norskeskog 제4분기 수익이 2149.74만 위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매우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만약 2013년에 이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 Norskeskog 2013년 수익에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순이익이 약 8,600만위안($2149.74\text{만위안} \times 4$)이고, 화태주식의 주당 수익 공헌은 0.13위안($8,600\text{만위안}/648,645,233\text{주}$)이다. 시간으로 이에 대해 관련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배송주식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새로운 회계준칙에 의해 진행하면 화태주식은 1위안만 투입하면 당기 5.21억 위안 수익을 이룰 수 있다. 비록 이는 장부가액 이윤이고 실제적인 현금유동의 지원이 없지만 회사 배송주식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만약 회사에 배송주식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의 신속한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 중소주주로서 바라는 것은 주가의 향상이다. 비록 2012년 화태주식의 이윤분배 방안은 10주에 1위안 예산이지만 이렇게 거대한 미배당이익이 기말 장부에 남겨있는 것은 향후 화태주식 배송주식에 양호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3.3.3 회계처리방법 선택에 대한 생각

기업 재무회계의 목적은 바로 기업 외부 회계정보 사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관련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회계준칙에 따라 진행하여 회사는 1위안만 투입하고 5.21억위안 수익을 본다. 하지만 새로운 현금흐름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실 피인수 회사가 현금화 될 때만 모회사는 진정으로 이 부분 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장부가액 이윤이고 실제적인 현금흐름의 지원은 없다.

만약 지분통합법으로 이 1위안 매수방안을 처리한다면 회사 당기 이윤은 증가하지 않는다. 전체 기업그룹으로 보면 이런 수익이 생긴 적은 없다. 단지 회계방법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이윤의 대폭 상향이 있게 되었고 상장회사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대폭 하락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지분통합법으로 합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업경영실적의 경제적 영향은 날로 커가고 있다. 때문에 미국은 2001년에 제141번 회계준칙을 발표

하여 지분통합법을 취소하였다. 매수법이 유일한 사용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2004년 3월 31일 새로 발표된 『국제재무보고준칙 제3번—기업합병』에서는 지분통합법을 취소하였다. 중국은 취소하지 않았다. 중국의 새로운 회계준칙에서는 비동일 지배 하에서 매수법을 사용하고 동일 지배 하에서 지분통합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례에서 회사는 매수법의 회계처리를 통해 회사수익을 크게 늘렸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만약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면 이런 상황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 때문에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절대적이 아니라 반드시 진실적으로 회사 경영상황을 반영하는 기업 합병의 진실목적과 방식으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응용해야 한다.

IV. 중국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의 현실적 선택

4.1 두 가지 회계 처리방법의 발전추세

합병 회계방법의 국제적인 발전역사에서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은 미국 20세기 40년대 말기 합병 열풍과 함께 나타났다. 지분통합법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초로 사용된 합병 회계방법이며, 미국은 처음으로 실무에서 지분통합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 첫 번째 기업합병 관련 권위적인 공고는 1950년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소속 회계절차위원회에서 발표한 제40번 회계연구공고 “기업합병”이다. 지분통합법은 합병기업 재무에 기업당기 수익을 신속히 높이고, 신속히 확장시키는 등 유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세기 60년대 미국에는 지분통합법을 함부로 남용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1970년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소속 회계원칙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6번 의견서 ‘기업합병’은 지분통합법 사용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각 분야에서 말하는 지분통합법 남용에 대한 비평에 대응하였다. 의견서가 효력을 발휘하면서부터 지분통합법의 남용도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그 후 영국과 국제회계준칙위원회 등에서도 지분통합법 사용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였다. 20세기 40년대 말기부터 90년대 말기까지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 혼합 사용되는 시기였다. 비록 세계 각 나라들은 합병회계문제에서 통일적인 국제관례를 이루지 않았지만, 매수법은 이미 세계 대부분 나라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점차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합병회계방법으로 되었다.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기본적으로 매수법을 사용하였다. 각 나라 합병회계방법은 지분통합법의 사용여부 및 운용 조건에 관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2001년 6월부터 미국재무준칙위원회(FASB)는 141번 재무회계준칙 『기업합병』을 발표하여 모든 기업합병에 매수법을 사용하여 합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후로 지분통합법을 폐지하였다. 그 후부터 지분통합법은 미국에서 50년의 역사를 끝마치게 되었다.

2004년 국제회계준칙위원회에서 제3번 국제재무보고 준칙을 발표하였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분통합법을 취소하였다. 모든 준칙규정에 만족하는 기업합

병은 매수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다국적 상장회사들이 국제회계준칙을 따르고 있다.

중국의 합병회계방법 발전역사에서 기업 합병회계준칙이 출시되기 전 중국에서 공포한 기업합병 관련 회계규정은 주로 『합병제표 임시시행조례규정』, 『기업합병 회계처리 관련 문제의 임시시행규정』이 있다. 1995년 공포한 『합병제표 임시시행조례규정』은 중국이 간단한 매수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 공포한 『기업합병 회계처리 관련문제의 임시시행 규정』은 중국이 흡수합병, 신설합병의 회계처리에 표준적인 매수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규정은 기업합병이 쌍방의 거래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투자행위와 시장평가 사이의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은 주식교환 합병 회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1999년 청화동방(清华同方)주식회사는 주주권을 교환 방식으로 노영(鲁颖)전자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성된 합병이다. 증권감독위원회 허가를 거쳐 합병회계처리방법에 지분통합법을 사용하였다. 그 후 신조(新潮)실업, 정홍(正虹)사료, 화광(华光)도자기, 대중(大众)과학창신 등 상장회사들의 주식교환 합병에 다 지분통합법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TCL그룹은 지분통합법으로 TCL통신에 대한 흡수통합을 완성하여 전체상장을 이루었다. 재무부는 2006년에 정식으로 대외에 『기업합병준칙 20-기업합병』을 발표하여 실무에서 합병회계처리방법이 혼란한 상황을 중지시켰다. 준칙은 기업합병을 동일지배하의 기업합병과 비동일 지배 하의 기업합병으로 나눈다. 그리고 동일 지배하의 기업합병은 지분통합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비동일 지배 하의 기업합병은 매수법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매수법과 지분통합법 외에 일부 학자들은 신주체법을 제시하였다. 신시작점법, 신실체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기업합병에 완전 새로운 한 보고주체가 생겼다고 가정하며 합병일, 즉, 완전 새로운 보고주체가 나타나는 날에 모든 합병참여 기업들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합병일 공정가액의 기초로 수치화해야 한다. 신주체법은 기타 참여 합병기업의 각 주체들이 모두 멸망되었다고 가정하며, 합병 때 새로운 회계주체에 의해 새로운 회계기초를 설립하면 된다. 때문에 합병참여의 각 회사 자산, 부채에 대해 모두 합병일 공정가액으로 조

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좌를 합병하거나 합병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합병 전 양쪽의 유보이익은 모두 새로운 회계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합병일의 합병 유보이익 수익은 "0" 이다. 이런 방법은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공정가액을 확정해야 하기에 조작에서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때문에 실무에서 흔히 조건에 부합되는 신설합병에만 사용되고 지주 합병 경우의 합병재무제표 작성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 방법은 여전히 연구단계에 있다.

4.2 중국 기업 합병 회계처리방법의 현실적 선택

4.2.1 중국 기업 합병이 회계처상 문제

(1) 매수법 사용할 때 피합병기업의 공정가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① 금전 국유주식의 존재는 피 합병기업의 공정가액 확정에 영향을 준다.

중국 증권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절대적인 지주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전 국유주식의 존재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특히 A주식)의 주식가격은 유동주식에 대한 정가다. 즉 유동주식만이 시장가격이 있고 금전 주식은 가격이 없다. 때문에 합병에서 피 인수회사의 금전주식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면 합병주체회사에서 발행한 금전주식도 가격계산이 어려워진다. 중국 상장회사의 주식은 대부분 절대적인 지주지위를 차지하는 금전 국유주식이다. 때문에 피 합병기업의 공정가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② 자산평가산업이 완벽하지 않아 피 합병기업 공정가액 확정에 영향을 준다.

미국과 같은 서양 선진국의 증권시장은 매우 발전되었고, 효율성 있기에 주는 객관적으로 회사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각종 평가기구들이 완벽히 설립되어 쉽게 자산의 공정가액을 얻게 된다. 이는 그들이 매수법을 시행하는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아직 신흥 산업이며, 여러 방면에서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중개평가기구도 역시 성숙되지 않았기에 피 합병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자산 평가업은 10여 년 발전만을 거쳤고, 자산평가

기구의 관리도 완벽하지 않다. 중국의 자산평가업무는 현재 단항자산평가에만 제한되어 있고, 회사 전체 가치 평가는 중국에서 아직 낮은 분야다. 때문에 자산평가 결과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으며, 기존 상황에서 중국 상장회사의 주식교환 합병에서 피인수기업의 공정가액은 진정한 평가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2) 합병기업의 관리자는 지분통합법을 통해 이익을 조작한다. 실제로 보면 피인수기업의 총자산은 평가 후 대폭의 증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분통합법은 이런 증(감)식의 존재를 무시하고, 장부가액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이로써 잠재적인 수익 혹은 적자를 숨겨두게 되며 합병기업이 향후 진행할 이윤 조작에 상당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의 증식부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병 후 1년이면 바로 이윤으로 전환된다. 기정이윤을 이루기 위해 합병기업은 일부 고정자산, 무형자산을 판매하거나 처리하여 즉시 이윤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교환 합병 후 피인수기업의 전체적 판매는 합병 자체 기업에 거액의 즉시이윤을 가져줄 수도 있다.

지분통합법에서 합병 후 기업을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에 합병이 어느 날에 일어나든 무관하게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전체 연간 손익은 모두 합병 후 기업 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은 연말에 심사에서 통과하거나 실적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공격적인 합병을 하게 된다. 그 해 연간 경영 실적이 좋은 기업 이윤을 기업의 제표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외에 지분통합법은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매입 자산에 대한 가치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재평가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기업은 합병 후 사실상 이미 증식되었지만, 장부로 반영되지 않은 자산을 처리할 수 있고 영업이익이나 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지분통합법은 기업가치 과저평가를 초래하고 심지어 할인발행 현상이 일어난다. 지분통합법을 사용할 때 장부가액을 주요 측정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이런 경우 합병 후 기업의 가치가 과소평가 된다. 일부 특수

경우 심지어 할인발행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TCL그룹의 주식교환 합병사건에서 유동주식의 입장가치가 액면가치보다 낮은 상황이 일어났다. 중국 『회사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면 “주식발생가격은 액면금액에 의할 수 있고, 액면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액면금액보다 낮을 수는 없다.” 때문에 지분통합법으로 인한 할인발행은 현행 회사법과 충돌된다.

(4) 매수법에 대해 말하면 이윤조정의 두 가지 유리한 무기는 공정가액과 영업권이다. 매수법에서 대가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지급하여 당기손익에 포함시킨다. 합병기업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조정하여 이윤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또한 본문의 산동 화태종이주식유한회사 합병의 원인 중 하나다.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기업을 매수하면 매입자산의 재평가 가치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과소평가하고 부채를 높게 평가하며 합병 후 자산과 부채를 처리하므로서 이익을 얻는다. 합병가격 차액은 영업권으로 장부에 기입되고 새로운 자산 감액 회계준칙에 의하면 영업권은 상각할 필요가 없으며 정기적으로 감식테스트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도 합병 후 영업권 감식테스트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 합병이윤 제표에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 특징을 이용하여 피인수기업은 합병 전 거액채고 가격하락 준비를 계상하거나 악성 부채준비를 계상하는 등 수단으로 거액 적자를 신고할 수 있으며, 합병 후 다시 돌려주거나 비용을 빨리 인식하고, 수입을 늦게 인식함으로써 합병 후 기업의 실적을 높인다.

때문에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든지 매수법을 사용하든지 실제 조작에서 일정한 이윤조작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것이기에 관련 부문과 투자자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4.2.2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사용비교

(1) 지분통합법은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었다.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은 기업 합병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처리방법이다. 각자 일정한 합리성이 존재하며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

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수법은 대부분 합병기업에 적용되고, 합병기업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합병 후 실체에서 지배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 기업에서만 실시되는 합병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누가 피 합병기업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일부 합병에서는 누가 합병기업인지여부는 구별되지 않는다. 특히 일부 합병업무에는 두 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한다. 그들은 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누가 합병기업이고 누가 피 합병기업인지 거의 구별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 때문에 지분통합법은 존재의 경제적 업무기초가 있다.

(2) 중국 증권시장의 불완전성은 매수법 응용의 제한성을 결정한다.

매수법 사용에 우선 먼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피인수기업의 공정가액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상장회사의 공정가액 확정은 여전히 문제다. 중국 증권시장의 중요한 특색이 바로 절대적 지주지위의 금전주식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의 주식가격은 유동주식에 대한 정가다. 다시 말하자면 유동주식만이 시장가격이 있고, 비 유동주식은 가격이 없다. 주식교환합병에서 양쪽 회사의 비 유동 주가는 측정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주식교환합병에서는 완전한 공정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 상장회사의 주식교환합병에서 피인수기업은 특수하고 증권시장과 회사 평가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중국 상장회사 주식교환합병은 아직 진정한 매수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에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3) 현재 중국은 국가기업 개혁의 중요단계에 들어섰다. 기업 사이의 합병 재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업무다.

이 과정에서 회계준칙은 나라의 거시적 경제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이는 회계준칙 기능의 한 가지이다. 지분통합법은 기업의 합병을 추진하는데 일정한 우세를 갖추었다. 예를 들어 현금지급 능력의 제한점을 돌파하여 기업이 더 크고 강하게 발전하도록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 악성 부채 고민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은 대규모로 자산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 때 국제 회계준칙위원회에서는 지분통합법을 취소할 것인가를 상의하고 있었으며 일본

은 강렬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지어 국제회계준칙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까지도 하였다. 이로써 반영되는 지분통합법이 기업 합병에 대한 추진 역할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범위로 볼 때 서양 나라들은 이미 다섯 번의 합병 열풍을 거쳤고, 매번 합병마다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국내,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더 크고 강한 자세로 국제경쟁에 나서야 한다. 중국이 아직 미국과 같은 발전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통합법은 아직 사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4) 기업합병 회계처리 방법의 효과분석.

중국과 같은 경우 중국의 독특한 용자환경과 합병하여 구체적인 분석으로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응용해야 한다. 상장회사에 대해 말하면 용자경로에는 채무용자를 포함하며, 주로 은행대출과 주주권용자이고, 주로 신주발행, 주식배당과 추가발행을 포함한다. 현재 중국증권시장의 발전에서 많은 회사는 용자경로를 주주권용자 핵심으로 진행한다. 중국 증권시장에서 상장회사의 신주발행, 주식배당과 신주 추가발행 등 용자전략들이 실현되는가는 순자산 수익률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요구에 도달하는가에서 결정된다. 대외로 보고하는 이익이 상장회사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용자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독특한 용자환경에서 순자산의 수익률은 상장회사의 ‘생명라인’으로 되었다.

일부 기업들은 상장, 주식배당과 추가발행을 위해 회계이윤과 주당 순수익을 과장하며 지분통합법을 더 잘 사용한다. 왜냐하면 지분통합법으로 더 높은 회계이윤과 주당 순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법은 지분통합법과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회계이윤과 주당 수익을 보게 된다. 때문에 관리자들은 지분통합법에 더 선호한다. 하지만 산둥 화태종이주식유한회사가 Norskeskog종이유한회사 주주권을 인수한 사례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구체적인 분석으로 합병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본 사례에서 지분통합법이 경제의 본질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투자자, 채권자, 사회대중들의 측면에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기업합병의

회계처리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2.3 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의 현실적 선택

중국 현재 단계의 국내시장 경제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지분통합법은 여전히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형세는 여전히 중국 현실적인 국가 상황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다.

우선, 중국은 현재 여전히 시장경제가 성숙되지 않은 경제 전형시기에 있다. 때문에 공평거래를 영향하는 요소가 많고, 자산거래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며, 평가중개기구의 독립성도 아직 부족하기에 공정가액의 확정도 질의한다. 현실적인 경제활동에서 이번의 금융위기로 우리는 공정가액의 측정은 거시경제 경기 하의 낙관적 예측을 일으키게 되고, 경제비관하의 비관적 예측을 확대하게 된다. 처리가 부당하여 일으키게 된 도미노 효과는 쉽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극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 매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일정한 문제가 있으며 지분통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

4.2.4 지분통합법 중국에서의 응용조건

(1) 준칙규범에서 엄격한 정의를 내린다. 우선 적당히 응용범위를 규정한다. 지주합병은 쉽게 합병기업과 피 합병기업을 구별할 수 있기에 지분통합법을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에만 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국제회계준칙이사회의 방식을 참고하여, 주주 주주권의 연속성, 업무경영관리의 연속성, 합병규모의 유사성을 지분통합법 사용 표준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지분통합법의 본질을 강조한다. 즉 선명한 지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합병기업을 식별하기가 어렵다. 이는 매수법과의 중요한 구별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지분통합법을 사용할 때, 생긴 문제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그 가운데 선례를 배워 중국에서의 지분통합법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2) 구속감독체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회계준칙은 효과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준칙 자체의 완벽함 정도와 회계인원의 소
질 외에 외부 일련의 제도 안배와도 관련된다. 경제가 더 발전하면 회계는 더
중요하다. 회계정보에 관련된 이익 관계자가 많아지면서 회계 위조에 대한 경
제이익 유혹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위험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때문에
회계정보의 생성과 전달 과정에서 순조로운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제
도규범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 사이의 합병은 관련 주관기구의 허
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경우 주관기구는 반드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거
래에 어느 합병방법을 사용해야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증권
감독부문, 회계사무소, 재산권거래시장, 자산평가 등 중개기구 및 기타 관련
부문들의 상호 협동이 필요하게 된다. 협력으로 관리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관
련 법률제도를 완벽히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지분통합법의 역할을 발
휘할 수 있다.

V. 결 론

세계 각 나라에서 지분통합법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데, 중국의 합병준칙은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공존을 허락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 국가 상황을 진정으로 반영하였다. 본문은 기업합병 회계처리 방법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은 갖게 되었다: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은 각자의 단점과 장점을 갖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중국경제 환경에 합병하여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하는 단계에 있다. 회계정보에 반영된다. 한 편 개혁개방이 계속 심화되면서 시장경제도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있고, 회계와 관련된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으며, 회계업무처리도 날마다 복잡해지고 있다. 투자자, 채권자와 사회대중 등이 회계정보 노출의 시효, 범위, 품질에 더 강한 요구를 원하고 있다. 또한 법의 의식이 약하고 관리체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조직과 개인은 이익의 유혹으로 법률, 법규, 준칙의 빈틈으로 장부와 제표를 위조하여 국가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 회계정보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 때문에 증권관리부문, 재산권거래시장, 회계 및 자산평가 사무소, 투자은행 등 관련 부문들의 상호 협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된 법률제도를 완벽히 하고, 각 부문의 감독관리 강화시켜, 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의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합병 회계방법 규범의 전략은: 전체적으로 매수법을 위주로 하고, 현재는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합병에 지분통합법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중국 시장경제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이 구비된 상황에서 지분통합법을 포기하고,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매수법을 기업합병의 유일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양오(1999), 『기업합병에 관한 전반적인 회계처리』.

김희철(1999),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 서울: 학문사.

문인진(1999), 「기업합병 회계 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맹현애(1997), 「기업합병 회계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호영(2007), 『고급회계』.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우택(2001), 『M&A회계와 실무-이론과 실무정합』, 조세통람사

2. 국외문헌

루어성치양(罗胜强)(2008), 『기업합병회계실무』, 상해, 입신회계출판사, pp.1-132.

루하오(卢浩)(2008), 『동일지배 기업합병 회계처리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샤먼(厦门), 샤먼대학교(厦门大学).

린싱치양(林兴强)(2007), 『고급재무회계(제2판)』, 샤먼, 샤먼대학교출판사, pp.395-623.

양치(杨琪)(2007), 『기업합병과 합병제표 준칙』, 중국재경경제출판사.

장이(张毅)(2008), 『기업합병 회계방법 선택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湖南), 호남대학교(湖南大学).

재무부(2008), 『기업회계준칙설명』, 북경, 인민출판사, pp.305-334.

중국공인회계사협회(2009), 「2009년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 보도자료—회계」, 북경, 중국재경경제출판사, pp.79-93. pp.487-504.

중화인민공화국재무부작성(2006), 『기업회계준칙 2006』, 경제과학출판사, pp.84-88.

중화인민공화국재무부작성(2006), 『기업회계준칙 2006사용지침』, 기업관리출판사, pp.14-21.

ABSTRACT

The Research of Accounting Methods for Combination on The Accounting in China

Liang, Wenmeng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ccounting for business combination has an issue concerned both in the field of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 Using different approach to measure business combination will lead to different accounting result and even different economic result and may also influence the combination itself. FASB and IASB eliminated the pooling of interests method one after another. In the trend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onvergence, China retained the pooling of interests method because of her special economical environment.

The thesis studies on choosing accounting methods in business combination. It begi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ccounting methods; next analyses the motivation of the combinations. It compares the application scopes of the purchase method and the pooling of interests method, analyzes the economical and accounting result when to use the two ways. Coming to the merger and absorption of HUATAI Group as an

example, compare the purchase and pooling of interest method of the financial situation, operating results and main financial targets, and the different accounting treatment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end, the thesis discusses combination theory statements and gives some combination suggestions in counter-strategies for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KEY WORDS: combination, purchase method, pooling of interest method